



질병관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및 「사례조사서」 개정 알림 및 결핵 신고 철저 당부

1. 국가 결핵관리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있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결핵환자등 신고 시 혼란이 없도록 개정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별지 제1호서식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제2호서식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

가. 주요 개정 사항 ※ 상세 개정내용 및 신고방법 관련 안내는 [붙임 2] 참고

- '항결핵약제 내성 코드' 정의 개정 및 내성 코드 추가*
 - * 광범위약제내성결핵 정의 개정, 광범위약제내성 전 단계 결핵 및 이소니아지드단독내성결핵 개념 도입
- '약제감수성검사 방법' 용어, '치료결과 구분 및 정의' 수정(의미는 현행과 동일)
- '결핵 질병코드' 신고·보고서 서식 상 제외,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개정

나. 적용일: '22.1.1. 시행, 2021.12.24.부터 신고서 개정사항 시스템* 선(先) 반영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결핵관리

3. 위 개정사항을 기관 회원 및 의료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시어,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및 사례조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대응 등으로 결핵환자의 진단·신고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핵 조기진단, 적기신고, 적정치료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지제1·2호서식 1부.

2.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및 사례조사서 상세 개정 알림 1부. 끝.

질병관리청장



수신자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보건연구사 **김진선** 보건연구관 **연가** 결핵정책과장 **김유미** 전결 2021. 12. 23.

협조자

시행 결핵정책과-3933 (2021. 12. 23.)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 <http://kdca.go.kr>
결핵정책과

전화번호 043-719-7315 팩스번호 043-719-7334 / lilykim@korea.kr / 부분공개(5)

질병정보 공금할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